

(영업점보관용)

결재	본인자필확인	팀원	책임자	팀장	부장

본인	성명 : <span style="float: right;">㉠</span>
	주소 :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는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농협손해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농협손해"이라 합니다)와 아래의 조건에 따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농협손해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약화합니다.

**제 1 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농협손해 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 내에 "v" 표시합니다.)

- 대출과목 : 대출 (대출종류 : )
- 거래구분 :  개별거래  한도거래
- 대출금액 :

금	원
(₩	)

- 대출개시일 : 20 년 월 일
- 대출기간 만료일 : 20 년 월 일
- 이자율 등 :  고정금리(농협손해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2조제2항제1호선택)
  -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연( )%
  - MOR ( ) 기준금리 + ( )%
  - 국고채 ( )년 기준금리 + ( )%
  - 신 잔액기준 COFIX 기준금리 + ( )%
  - 기타 ( ) + ( )%
- 변동금리(농협손해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2조제2항제2호선택)
  - 보험사 기준금리 + ( )%
  - MOR ( ) 기준금리 + ( )%
  - 국고채 ( )년 기준금리 + ( )%
  - 신 잔액기준 COFIX 기준금리 + ( )%
  - 기타 ( ) + ( )%

- 지연배상금률(농협손해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2조 제5항 적용) : 최고 연( )%
-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 1년을 365(윤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수수료납부 :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정수하는 아래의 수수료는 대출실행 후 최초 이자입금일일에 납부하기로 합니다.
  - ( ) 수수료 ( )원

- 대출실행방법 :
  - 대출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 )월 이내에서 증빙서류나 현물등에 의하여 농협손해의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 )월 이내에서 매 ( )개월마다 분할 실행합니다.
  - 기타 ( )

- 상환방법
  -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 )개월동안 거치하고, ( )년 ( )월 ( )일 부터매 ( )개월 마다 분할상환합니다.
  - 최종의 대출 실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대출개시일 해당일부터 매 ( )개월마다 분할 상환합니다.
  - 자유로이 상환하되,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상환일부터 소급하여 매 ( )개월마다 정한 납입일에 상환합니다.
  - 기타 ( )

- 이자 지급시기 및 방법
  - 대출개시일부터 매 ( )개월마다 정한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 최초이자 지급은 대출개시일로부터 ( )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 )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 상환일부터 소급하여 매 ( )개월마다 정한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 분할상환원금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 대출기간 만료일에 지급합니다.
  - 이자 지급 이체일은 ( )일에 지급합니다.
  - 기타 ( )

\* 위 제 11호 및 12호 사항은 금융기관 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X ( )% X (잔여기간/대출기간)
- 기타특약 : ( )
  - \* 위 제 11호 및 12호 사항은 금융기관 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2 조 대출금 수령계좌**

금융기관	입금 계좌번호	예금주
	자동이체 계좌번호	

**제 3 조 이자율의 변동**

- 제1조의 거래조건중 이자율은 대출약정일 기준으로 산정된 금리입니다. 대출을 실행하는 날에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적용기준 변경 등의 사유로 이 대출에 적용할 금리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제 적용할 대출이자율은 문자(SMS) 또는 이메일로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 MOR(Market Opportunity Rate:시장조달금리)기준금리(□ 3개월물, □ 6개월물, □ 1년물, □ 2년물, □ 3년물, □ 5년물)는 (□ 매3개월, □ 매6개월, □ 매1년, □ 매2년, □ 매3년, □ 매5년) 주기로 재산정 하기로 하며, 금리재산정 주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출하기로 합니다.
  - 재산정주기가 3개월인 경우에는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3영업일간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91일물 CO유동수익률」 증가의 단순평균값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 재산정 주기가 「6개월」·「1년」·「2년」·「3년」·「5년」인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 재산정 주기 해당일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3영업 일간 KIS채권평가, 한국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가 고시하는 「재산정주기 해당 기간의 AAA등급 금융채유동수익률」 증가(4사 평균)의 단순평균 값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 이 기준은 금융환경의 변화(예: 91일물 CO거래 없음)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협손해는 고객센터 게시판, 인터넷메체 등을 통해 고시하기로 합니다.
- COFIX(Cost of Funds Index: 자금조달비용지수) 기준금리는 (□ 매6개월, □ 매1년, □ 매( )년) 주기로 재산정 하기로 하며, 매 재산정 주기 해당되는 날에 대해서는 매일 전국은행연합회가 고시한 「COFIX 기준금리」를 적용하되, 고시일까지는 직전월 「COFIX 기준금리」를 적용하고, 고시일 익영업일부터는 해당월의 「COFIX 기준금리」를 적용합니다.
- 국고채 기준금리 (□ 1년물, □ 3년물, □ 5년물, □ 10년물, □ 20년물, □ 30년물)는 (□ 매 1년, □ 매 3년, □ 매 5년, □ 매( )개월) 주기로 재산정 하기로 하며, 매 재산정 주기 해당되는 날에 대해서는 매일 금융투자협회가 고시(15시30분)하는 최종 호가수익률을 적용하되, 금리재산정일의 직전영업일 국고채기준금리를 적용합니다.
- 보험사 기준금리는 매일 주기로 재산정 하기로 하며, 금리 재산정은 보험 종류별 전전월 예정(공시)이율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지수를 적용합니다. 보험사 기준금리에 연동하는 변동대출의 경우 농협손해가 정하는 일자부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조정금리 대출의 경우에는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사정 변경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대출만기일까지 금리를 변동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연신기간 만료시 기한연기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함이 없이 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도 기준금리, 채무자의 신용등급 또는 담보가치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하며 변경된 이자율은 10일 이내에 우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다만, 이자율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 또는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제6항 본문에 의거 변경된 이자율에 이의가 있을 때는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 전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하며, 해지일 경과시까지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이 적용됩니다.
- 제7항에 정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기타특약**

변동금리대출은 대출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대출이자율이 변동될 수 있으며 대출이자율 인상시에는 재무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내용과 대출기간 만료일 전(기한연기로 만기일이 연장된 경우 포함)에 대출금을 상환(일부상환 포함) 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 하였습니다	본인	㉠
---	----	---

본인은 농협손해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본인	㉠
--	----	---

**제 5 조 인지세의 부담**

-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농협손해가 부담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농협손해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농협손해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 ③ 채무자와 회사의 약정에 의해 회사가 부담 할 수도 있다.

수입인지 붙이는 곳

**제 6 조 중도상환수수료**

- ①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기간만료일(기한연기로 대출기간만료일이 연장된 경우 포함, 이하같음) 전에 상환할 때에는 제1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대출기간 및 잔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됩니다.
  - 1. 대출기간은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기간만료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하되,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을 대출기간만료일로 합니다.
  - 2. 잔여기간은 대출기간에서 대출개시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 1. 정상적인 할부상환원금을 납입하는 경우
  - 2. 기한의 이익 상실 등의 사유로 당사가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 3. 대출 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
  - 4. 대출 만료일 전 1개월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 5. 채무자 사망의 사유로 대출금을 당사가 회수하는 경우 (상속인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제 7 조 담보·보험**

본인은 농협손해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대출로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 주택을 농협손해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농협손해가 요청하는 경우 농협손해가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농협손해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제 8 조 대출기간 자동연장 특약**

제1조의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농협손해는 본인에 대한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를 거쳐 기한연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기한연기동의서를 받지 않고 대출기간을 ( )년 단위로 연기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 9 조 지연배상금**

- 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농협손해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③ 이 약정에 의한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체일수 X (채무자 대출금리 + 3%) ÷ 365(윤년은 366)로 적용하되, 지연배상금률이 연 17%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7%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④ 제3항에서 채무자 대출금리라 함은 연체 직전의 정상 이자율을 말하며 이차보상을 받는 대출은 이차보상금리를 포함합니다.

※ 해당 계약서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당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고객용)

본인	성명 :
	주소 :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는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농협손해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농협손해이라 합니다)와 아래의 조건에 따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농협손해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인합니다.

**제 1 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농협손해 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 내에 “V” 표시합니다.)

- 대출과목 : 대출 (대출종류 : )
- 거래구분 :  개별거래  한도거래
- 대출금액 :

금	원
(₩	)

- 대출개시일 : 20 년 월 일
- 대출기간 만료일 : 20 년 월 일
- 이자율 등 :  고정금리(농협손해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2조제2항제1호선택)
  -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연( )%
  - MOR ( ) 기준금리 + ( )%
  - 국고채 ( )년 기준금리 + ( )%
  - 신 잔액기준 COFIX 기준금리 + ( )%
  - 기타 ( ) + ( )%
- 변동금리(농협손해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2조제2항제2호선택)
  - 보험사 기준금리 + ( )%
  - MOR ( ) 기준금리 + ( )%
  - 국고채 ( )년 기준금리 + ( )%
  - 신 잔액기준 COFIX 기준금리 + ( )%
  - 기타 ( ) + ( )%

- 지연배상금(농협손해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2조 제5항 적용) : 최고 연( )%
-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 1년을 365(윤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수수료납부 :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정수하는 아래의 수수료는 대출실행 후 최초 이자입금일일에 납부하기로 합니다.
  - ( ) 수수료 ( )원
- 대출실행방법 :
  - 대출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 )월 이내에서 증빙서류나 현물등에 의하여 농협손해의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 )월 이내에서 매 ( )개월마다 분할 실행합니다.
  - 기타 ( )

- 상환방법
  -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 )개월동안 거치하고, ( )년 ( )월 ( )일부터 매 ( )개월마다 분할상환합니다.
  - 최종의 대출 실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대출개시일 해당일부터 매 ( )개월마다 분할 상환합니다.
  - 자유로이 상환하되,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상환일부터 소급하여 매 ( )개월마다 정한 납입일에 상환합니다.
  - 기타 ( )

- 이자 지급시기 및 방법
  - 대출개시일부터 매 ( )개월마다 정한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 최초이자 지급은 대출개시일로부터 ( )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 )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 상환일부터 소급하여 매 ( )개월마다 정한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 분할상환원금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 대출기간 만료일에 지급합니다.
  - 이자 지급 이체일은 ( )일에 지급합니다.
  - 기타 ( )

\* 위 제 11호 및 12호 사항은 금융기관 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X ( )% X (잔여기간/대출기간)
- 기타특약 : ( )
  - \* 위 제 11호 및 12호 사항은 금융기관 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2 조 대출금 수령계좌**

금융기관	입금 계좌번호	예금주
	자동이체 계좌번호	

**제 3 조 이자율의 변동**

- 제1조의 거래조건중 이자율은 대출약정일 기준으로 산정된 금리입니다. 대출을 실행하는 날에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적용기준 변경 등의 사유로 이 대출에 적용할 금리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제 적용할 대출이자율은 문자(SMS) 또는 이메일로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 MOR(Market Opportunity Rate:시장조달금리)기준금리(□ 3개월물, □ 6개월물, □ 1년물, □ 2년물, □ 3년물, □ 5년물)는 (□ 매3개월, □ 매6개월, □ 매1년, □ 매2년, □ 매3년, □ 매5년) 주기로 재산정 하기로 하며, 금리재산정 주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출하기로 합니다.
  - 재산정주기가 3개월인 경우에는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3영업일간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91일물 CO유동수익률」 증가의 단순평균값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 재산정 주기가 「6개월」·「1년」·「2년」·「3년」·「5년」인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 재산정 주기 해당일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3영업일간 KIS채권평가, 한국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가 고시하는 「재산정주기 해당 기간의 AAA등급 금융채유동수익률」 증가(4사 평균)의 단순평균 값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 이 기준은 금융환경의 변화(예: 91일물 CO거래 없음)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협손해는 고객센터 게시판, 인터넷메체 등을 통해 고시하기로 합니다.
- COFIX(Cost of Funds Index: 자금조달비용지수) 기준금리는 (□ 매6개월, □ 매1년, □ 매( )년) 주기로 재산정 하기로 하며, 매 재산정 주기 해당되는 날에 대해서는 매일 전국은행연합회가 고시한 「COFIX 기준금리」를 적용하되, 고시일까지는 직전월 「COFIX 기준금리」를 적용하고, 고시일 익영업일부터는 해당월의 「COFIX 기준금리」를 적용합니다.
- 국고채 기준금리 (□ 1년물, □ 3년물, □ 5년물, □ 10년물, □ 20년물, □ 30년물)는 (□ 매 1년, □ 매 3년, □ 매 5년, □ 매( )개월) 주기로 재산정 하기로 하며, 매 재산정 주기 해당되는 날에 대해서는 매일 금융투자협회가 고시(15시30분)하는 최종 호가수익률을 적용하되, 금리재산정의 직전영업일 국고채기준금리를 적용합니다.
- 보험사 기준금리는 매일 주기로 재산정 하기로 하며, 금리 재산정은 보험 종류별 전전월 예정(공시)이율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지수를 적용합니다. 보험사 기준금리에 연동하는 변동대출의 경우 농협손해가 정하는 일자부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에는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사정 변경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대출만기일까지 금리를 변동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연신기간 만료시 기한연기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함이 없이 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도 기준금리, 채무자의 신용등급 또는 담보가치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하며 변경된 이자율은 10일 이내에 우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다만, 이자율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 또는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제6항 본문에 의거 변경된 이자율에 이의가 있을 때는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 전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하며, 해지일 경과시까지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이 적용됩니다.
- 제7항에 정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기타특약**

변동금리대출은 대출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대출이자율이 변동될 수 있으며 대출이자율 인상시에는 재무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내용과 대출기간 만료일 전(기한연기로 만기일이 연장된 경우 포함)에 대출금을 상환(일부상환 포함) 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 하였습니다	본인	㉠
---	----	---

본인은 농협손해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본인	㉠
--	----	---

**제 5 조 인지세의 부담**

-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농협손해가 부담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농협손해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농협손해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 ③ 채무자와 회사의 약정에 의해 회사가 부담 할 수도 있다.

**제 6 조 중도상환수수료**

- ①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기간만료일(기한연기로 대출기간만료일이 연장된 경우 포함, 이하같음) 전에 상환할 때에는 제1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대출기간 및 잔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됩니다.
  - 1. 대출기간은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기간만료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하되,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을 대출기간만료일로 합니다.
  - 2. 잔여기간은 대출기간에서 대출개시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 1. 정상적인 할부상환원금을 납입하는 경우
  - 2. 기한의 이익 상실 등의 사유로 당사가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 3. 대출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
  - 4. 대출 만료일 전 1개월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 5. 채무자 사망의 사유로 대출금을 당사가 회수하는 경우 (상속인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제 7 조 담보·보험**

본인은 농협손해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대출로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 주택을 농협손해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농협손해가 요청하는 경우 농협손해가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농협손해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제 8 조 대출기간 자동연장 특약**

제1조의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농협손해는 본인에 대한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를 거쳐 기한연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기한연기동의서를 받지 않고 대출기간을 ( )년 단위로 연기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 9 조 지연배상금**

- 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농협손해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③ 이 약정에 의한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체일수 X (채무자 대출금리 + 3%) ÷ 365 (윤년은 366)로 적용하되, 지연배상금률이 연 17%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7%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④ 제3항에서 채무자 대출금리란 함은 연체 직전의 정상 이자율을 말하며 이차보상을 받는 대출은 이차보상금리를 포함합니다.

※ 해당 계약서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당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관련 고객 권리 안내문**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이용 및 제공됩니다. 필수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공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권**

가. 고객은 가입신청시 동의한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당사의 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의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당사에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금융)거래 관계를 설정하면서 동의를 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는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나.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정지를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 [www.nhfire.co.kr](http://www.nhfire.co.kr)
  - 전화접수: 1644-9000
  - 서면접수: 당사 고객센터

다. 위의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당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보호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당사 개인(신용)정보 보호책임자 연락처: 1644-9000
  - 은행연합회 정보보호담당자 연락처: 민원상담실 (02)3705-5000
  -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연락처: 민원상담실 (국번없이) 1332

**3.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권**

가. 고객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당사 홈페이지([www.nhfire.co.kr](http://www.nhfire.co.kr))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http://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 각 고객센터 앞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 요구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6조): 당사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한 후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이 제한 또는 거절될 수 있음)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신용정보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받은 자,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제공한 신용정보의 주요 내용, 제공받은 자, 이용 목적 등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본인의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고, 정정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고객은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마이크레딧, 크레딧뱅크,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를 통하여 4개월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크레딧: 02) 1588-2486 / [www.mycredit.co.kr](http://www.mycredit.co.kr)
- 크레딧뱅크: 02) 3771-1004 / [www.creditbank.co.kr](http://www.creditbank.co.kr)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02) 846-5000 / [www.siren24.com](http://www.siren24.com)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02) 708-1000 / [www.kcb4u.com](http://www.kcb4u.com)